

『2024년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4년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보건의료 수출 교두보 확보 및 보건의료협력 관계 구축에 따른 보건 의료 중점협력국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진출 지원 확대
 - 아세안(ASEAN) 7개국과 보건의료협력 사업 추진(23.4) 및 한-GCC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 타결(23.12)에 따른 보건의료 산업 수출 기반 마련 등
- 보건의료 수출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수출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 법·제도, 애로사항 등 경험 공유를 통한 수출 후발주자 양성
 - * 지원기관을 보건의료산업 수출 선두주자 및 교두부로 활용하여 수출 경험 공유·전파

2. 공고개요

- 사업명: 2024년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 추진목적: 한국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 및 보건산업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진출여건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보건의료 중점협력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을 추진(예정)하고 있거나, 보건산업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기관 및 컨소시엄***

* GCC(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또는 ASEAN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나.-바.

*** 의료기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특수목적법인(SPC), 의료기기·제약·화장품·디지털 헬스케어 등 연관 사업체(단, 보건산업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현지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기 형성된 기관이어야 함)

3. 지원일정 및 선정절차

- 접수기간: 2024.7.1.(월)~2024.7.12.(금)(18:00)까지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hkim26@khidi.or.kr)
- 선정절차 및 일정

접수기간	서류평가	대면평가	결과통보 (대상확정)	협약체결	사업종료
'24.7.1~ '24.7.12 18:00까지	'24년 7월 3주	'24년 7월 4주	'24년 8월 1주	'24년 8월 2주	'24.11.29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단년도(1년) 지원 사업
 - 지원예산규모는 기관당 최대 100백만원으로, 3개 내외 기관 선정 예정
 - * 단,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은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지원세부내용) 중점협력국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 및 보건 산업 국제교류 지원
 - (정부차원 공식지원) 해당 국가와 협의를 통해 양국 G2G 주요 아젠다로 포함하는 등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부차원 지원 제공
 - (경비지원)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경비
 - * (주요사용내역)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컨설팅(법률, 회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현지 홍보(세미나, 투자설명회 등)·네트워크 구축 활동, 기타 자산취득성 외의 사업추진 경비 등
 - (기타) 복지부 및 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의료지원사업과 연계한 입체적 지원 제공
 - * 국가별 G2G 워킹그룹 참여,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바이어 미팅 매칭, 온오프라인 협력 행사(컨퍼런스, 포럼, 웨비나) 개최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 및 보건산업 국제교류 사업내용 예시]

-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수출)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 간이식, 암 치료, 내시경 치료법 등 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현지 의료인 유상연수
 - AI를 활용한 기술·제품·솔루션 등 현지 병원 공급
 - 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 제공
 - 병원정보시스템, 의료 클라우드 공급 등
- (보건산업 국제교류)
 - 환자유치 연계를 위한 PPCC(사전사후관리센터) 운영
 - 해외실증(POC)을 통한 현지 임상센터 및 의료기기 안전성 테스트센터 운영
 - 기 진출 한국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수요 기반 맞춤형 사업

* 세부사업내용은 선정 후 협의를 통해 변경 및 조정 가능

○ (지원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 사업의 내용이 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사업이 기 지원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지원사업 중 제재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의료 해외진출 신고)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결과물

○ 결과보고서(회계정산보고서 포함), 산출물, 의료해외진출 신고*

- 시장조사(보건의료현황, 법·제도, 인허가 등), 의료서비스·산업 수출 진행 경험, 수출 실적 및 보건산업 국제교류 실적, 애로사항, 홍보 활동 등 사업추진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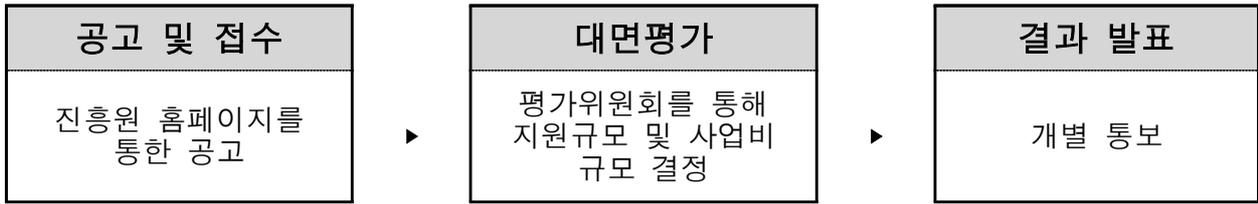
- 추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출 현지화 전략 도출, 경험 공유 세미나
- * 의료해외진출법 제4조에 의거, 의료 해외진출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음(세부 신고일정 및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진행 가능)

6. 평가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배점
대상과제 매력도 (40점)	대상국가 및 과제 매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의 중점협력국 여부, 시장 매력도, 중요성, 기대효과 등 과제 추진 당위성 대상국 추진의지 	15
	추진경과 및 사업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사의 사업추진 경과, 유관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10
	사업 파급효과 및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사업 기대효과, 경험 공유 및 후발주자 양성 의지 	15
대상과제 이해도 (10점)	대상과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출하고자하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보건산업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대상국가 및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 	10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30점)	사업 수행계획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범위, R&R, 추진일정, 세부 시나리오 수립의 현실성 및 착수·중간·완료보고 계획 적절성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15
	사업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사업 준비도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최종 산출물 품질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산출물 구성·내용·품질의 적절성 	10
수행기관 역량 (20점)	투입인력편성/인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책임자의 유관 사업 수행경험 투입인력의 기술력 및 자질(경력, 자격 등) 단계별 자원배분의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의 적정성 	10
	예산집행계획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사업비 지출계획 적정성 	10
평가 총점(A)			100
가산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의료기관 * 증빙 : 의료해외진출 신고확인서 	5
최종 합계(A+B)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점수는 가·감점을 포함하여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평가 점수 동점인 경우 <1순위: 대상과제 매력도, 2순위: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3순위: 수행기관역량> 순

7. 선정절차



- ①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공고 게시
- ② **제안서 접수:** 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 *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조건 미충족 등 형식적 조건의 미비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③ **대면평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내용,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4인 이상 포함, 총 6명 이상 구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사업 선정
 -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평가 권한은 주관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④ **결과발표:** 신청기관 대상 개별 통보

8.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회계정산보고서 및 관련 결과물 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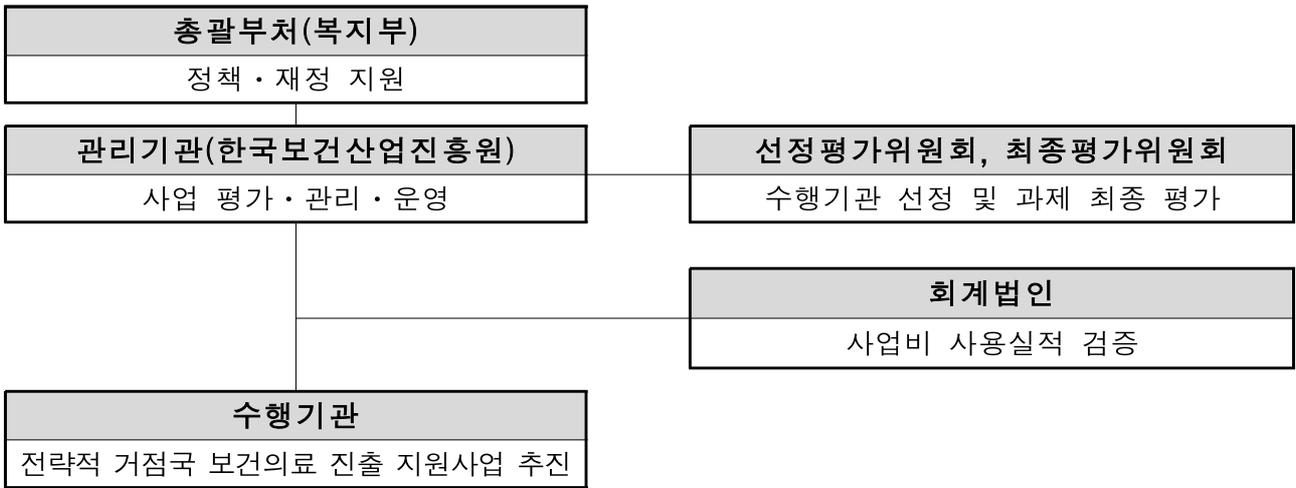
9. 제출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NO.	서류명	파일 형태	내용
1	사업계획서	HWP	- [붙임2] 작성하여 제출
2	기관공문	PDF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3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PDF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불인정/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최근 3개월 이내)
4	서약서	PDF	- [서식 1] 작성하여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6	공동수급 협정서	PDF	- 컨소시엄 구성 시, [서식2] 작성하여 제출 * 자체적 내부지분 비율 제한 없음
7	대표자선임계	PDF	- 컨소시엄 구성 시, [서식3] 작성하여 제출
8	사업추진 증빙서류	PDF	-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의료해외진출 신고증 해당시)

○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nhkim26@khidi.or.kr)

10. 추진체계



11. 추진절차



- ①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평가를 토대로 지원 범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체결하고 선정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 수행, 착수보고회 개최
- ② **사업수행:**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별 사업수행 보고서(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③ **선급금 지급 및 중간보고:**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선급금 관련 서류 제출 완료시) **14일 이내** 선급금을 교부(지원금의 70%)
- ④ **중간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중간실적 점검, **24년 9월 중**으로 개최
- ⑤ **잔금 지급:** 9월 중간보고 후 **14일 이내** 잔금을 지급함(지원금의 30%)
- ⑥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비 정산은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함

* 결과보고서(회계정산보고서 포함), 산출물, 의료해외진출신고 등 진흥원 요청에 따른 결과물

12. 문의처

- 담당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김나현 연구원
(☐ nhkim26@khidi.or.kr / ☎ 043-713-8956)

[붙임1]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붙임2]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3.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한 사업 내용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짐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가 있음

2024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참고

사업 수행 절차

□ 사업수행 절차

업무 수행절차	세부내용
사업 수행 안내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 안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 잔금지급 시 필요서류 안내- 지원사업금 지출 및 정산방법 안내■ 협약서 날인 : 협약서 2부 협약서 날인 및 협약 서류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	
선금 신청 서류 제출 및 선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서류 제출 :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업체에 선금 지급(제출 후 입금까지 약 14일 소요)
↓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수행기관)
↓	
잔금 신청 서류 제출 및 잔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서류 제출 : 잔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검토 후 업체에 잔금 지급(제출 후 입금까지 약 14일 소요)
↓	
사업완료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서 제출(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비 정산(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 회계법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결과보고서 검토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한 결과보고에 대한 결과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	
집행잔액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잔액 반납 : 회계법인 정산 후 반납금액(발생이자제외) 계산서 제출

2024년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을 보유하며,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음에 동의함
-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기 관 명)와 (기 관 명)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책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한다.

1. 사 업 명 : 전략적 거점국 보건의료 진출 지원사업
2. 계약금액 : ₩000,000,000(정부지원금: ₩00,000,000, 자체부담금: ₩00,000,0000)
3. 발주자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주관기관)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주관기관 소재지 기재
3. 대 표 자 성 명 : 주관기관 대표자명 기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업무분장) ① 공동수급체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주관기관 : 단체명 기재 (대표자:)
2. 참여기관/단체 : 기관/단체명 (대표자:)
3. 참여단체/기관 : 단체/기관명 (대표자:)

② 사업수행을 위한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사업 수행시 주요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2. 참여기관/단체 : 사업 수행시 주요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3. 참여단체/기관 : 사업 수행시 주요역할 - 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 및 책임은 제4조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8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구분	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주관기관명 기재 (공동수급체대표자)			

제10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관명	출자비율
1	주관기관명 기재(공동수급체대표자)	00%
2	참여기관명 기재	00%
3	참여기관명 기재	00%
총계		100%

대표자 선임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은 진출병원 거점화 지원 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주관기관명 기재의 대표 ○ ○ ○을/를** 공동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 명단>

기관명	역할	성명	날인
	주관기관 사업 책임자		(인)
	참여기관 사업 책임자		(인)
	참여기관 사업 책임자		(인)

2024년 00월 00일